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1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 보고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정당선거분과) 논의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 | | |
|--|---|
| ○ 간사(김재원) 인사 | 1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 보고 | 2 |
|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정당선거분과) 논의결과 보고 | 6 |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사(김재원) 인사

○위원장 원혜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막중한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정개혁위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맡은 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감사합니다.

박영선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개혁위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고맙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지만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 정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4당 간사에게 위임하였습니

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발전특위에서는 16차례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최하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세연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축소와 기탁금 및 기탁금의 반환 기준 하향 조정 그리고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와 정당후원제 제도 입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치발전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가 심사를 계속하여 여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선거제도 관련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 보고와 헌법개정특위 정당선거분과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 보고

(14시49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실현이라는 원칙 아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부작용이 작으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였고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 여러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고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과 절차 사무 간소화 등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아울러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을 대비하여 보완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어진 현안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대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거정책실장 김세환 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능한 한 좀 압축적으로, 중요한 사안 위주로 한 10분 정도에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정의견 제출 배경과 작성 방향, 주요 내용, 내년 지방선거 대비 개정이 시급한 사항과 실무 개정사항, 참고자료 순입니다.

1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선거 경험과 성숙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본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성 방향입니다.

작년 6월 23일 제출한 개정의견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8월 25일 제출한 개정의견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세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운동 자유 확대 부분입니다.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소품과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면 보시겠습니다.

시설물과 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시설물과 인쇄물 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4면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일 후 선거운동 경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의 선거운동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5면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 수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1000만 원씩 가산하도록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를 제안했습니다.

6면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제안했으며,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7면 보시겠습니다.

언론활동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주요 언론기관의 정책 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책과 공약 비교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8면 보시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유도를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설치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은 30억 원 이상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9면 보시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면 보시겠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한 의견입니다.

니다.

먼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권자 신뢰 보호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당초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1면 보시겠습니다.

선상투표를 위해 활용되는 현행 팩시밀리는 기기의 잦은 오류와 위성통신 음영지역으로 인해 선상투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 팩시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12면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정의견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과 그 보고서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별 지역구수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13면 보시겠습니다.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먼저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기하고 투표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선거인명부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재판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

습니다.

14면 보시겠습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 활동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5면 보시겠습니다.

정책경쟁 중심 정치·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 정책실명제와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출판물 유상판매 등을 허용하며, 정기보고에 연구원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16면 보시겠습니다.

현행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비하고, 정당 설립 시부터 법정요건 구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17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의견입니다.

먼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100분의 50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해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18면 보시겠습니다.

정당 재정의 과도한 국고 의존을 방지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촉구를 위해 당비 납부액과 납부비율에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보조금 실제 지급액은 정당의 당비 수입총

액과 납부자수 비율에 연동하되, 산정된 금액이 정당별 배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정당별 배분 한도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9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먼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 당선자와 낙선자는 반환기탁금과 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20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사적사용 규제 강화를 위해 지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사적·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형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를 선거범죄 신고자에 준해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21면 보시겠습니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선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표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거나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면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대비 실무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제출한 개정의견 중 실무적 사항입니다.

선거공보 발송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송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는 개표절차가 복잡해서 개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23면 보시겠습니다.

원활한 선거관리 준비를 위해 지방선거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받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그 설치목적은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24면 보시겠습니다.

중전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개정이 필요한 실무사항입니다.

읍·면·동 업무 간소화를 위해 구·시·군위원회 제출용 선거인명부 등본 작성을 폐지하고, 사전투표소 공고문 첨부규정과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통지규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개표참관인 참관 안내 내실화를 위해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일까지에서 선거일전 2일까지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25면 보시겠습니다.

선거일 임박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투·개표인력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거일전 3일까지 투·개표사무원 성명 공고절차를 폐지하도록 했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순환배열 기준을 기존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구·시·군 단위로 확대해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도의 구·시·군수가 후보자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26면 보시겠습니다.

국민투표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한 실무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시 투표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용이 불가피하므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을 기존 선거일전 60일까지에서 선거일전 50일까지로 연장하고, 선상투표자와 국외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재외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입국한 경우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의 귀국투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면 보시겠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누락자 구제를 통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서 선거일전 15일로 이틀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공관을 통해 접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정당선거분과) 논의결과 보고

(15시09분)

○위원장 원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법개정특위 정당선거분과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이준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존경하는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 제2소위 정당선거분과 간사 이준한입니다.

지난 2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정당선거분과가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면입니다.

개헌안 내용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현행 헌법 제8조제2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당 설립 자유의 폭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헌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확대할 경우 지역에 기초한 정당의 조직을 허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에 기초한 정당을 허용할 경우에도 전국당과 지역당의 구분 없이 모든 정당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헌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기초한 지방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3면입니다.

개헌안 두 번째 내용은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의 폐지 또는 보완입니다.

현행 헌법 제8조제3항에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이 해외 주요 선진국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되겠고요. 당초 국고보조금 제도가 한국에서 도입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면입니다.

만약 정당의 국고보조금 규정을 당장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정당 국고보조금의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위하여 배분기준, 집행 범위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면입니다.

세 번째 개헌안 내용은 양원제 도입 여부입니다.

시대적 요청인 분권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 및 통일 대비라는 차원에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가 큼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인 단원제에서도 비효율성이 있고 또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정부 형태가 도입될 경우에는 양원제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원제를 이번 개헌을 통하여 도입할 경우에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지적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단원제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양원제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면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것인데, 현재 의원정수의 증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확산 중이나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인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자칫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 장기적인 인구변동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면의 참고사항입니다.

의원정수를 현행 200인 이상으로 해 두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사이의 비율을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했듯이 2 대 1 비율로 할 경우에 실질적인 의원정수의 증대와 비례대표의 증대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 획기적인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면입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 여부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독일식 연동형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11페이지에 보다시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이번 개헌에서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소수당의 난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지규정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헌안은 12면에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안입니다.

정당·선거분과에서 가장 대립되는, 의견의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안이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할 때는 그 장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단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비춰 봐서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을 선거제도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결선투표제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신중한 국민의 판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13면의 참고

사항을 봤을 때 결선투표제가 본질적으로 매우 비민주적이고 조작적인 선거제도라고 하는 점이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또 현행 선거에서도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결선투표제가 목적으로 하는 50%에 거의 육박하거나 50%를 넘는 당선자가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13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면의 선거관리 관련 조항입니다.

현행 헌법에 제7장은 ‘선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7장의 이름을 ‘선거위원회’로 바꿔서 다른 장, 헌법의 장과 통일성을 유지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또 현행 헌법 제114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무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개헌안을 분명하게 하자는 내용 그리고 선거위원회를 중앙위원회와 각급 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면입니다.

남녀동수제를 프랑스가 2000년대에 개헌을 통해서 채택한 이후에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상당히 제고시킨 것을 한국에서도 사례로 삼아서 남녀동수제를 헌법으로 명문화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면입니다.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에 관련된 것인데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선거연령을 18세보다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로 규정해 놓을 경우에 개헌을 해야 될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할 때 취학연령의 하향조정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헌안으로 자문위원회에서는 논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지금 선관위 보고에서 광역의회 선거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과 의회 정수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재작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을 어기고 또 선거에 임박해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부분은 아주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보고한 현안보고 내용의 2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 선거법의 어떤 틀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시도의원, 광역의원 선거구구역표가 결정이 돼야 또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도 함께 해 줘야, 선거구 획정을 12월 13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방선거의 획정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하는 것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희망사항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시도선관위 산하에 획정위원회를 두면 어떤가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여러 가지 선거구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래서 그것 연동해서 당연히 지방의회 선거구도 조정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만일, 선관위에다가 질의할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는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를 못 하고 중간에 사퇴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비후보자등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 그게 선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시·군의원,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 산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는 시·도지사 산하에 둬므로 인해서 혹시 정치적으로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 준합니다만 실무적인 의견은 시도선관위원회에 획정위원회를 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한정 위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제약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작동 자체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결과라는 지적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다음으로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공직선거법 22조에 따라서 지역구의원 10%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100분의 10입니다.

○**김한정 위원** 이게 지난 95년 제정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선거구는 비례대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광역의회는 비례가 이렇게 제약돼 있고 제한돼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비례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선거 때마다 많이 논의가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이 논의되다가 결국은 축소가 됐지요. 됐는데, 저는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광역의회 비례대표 신설 취지가 당시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95년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라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비례가 부족하고 또 여성 의원들의 배출이, 전체 300석 중에 15%가 비례고 여성 국회의원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왜곡은 더 심합니다. 전국 광역의원 789명 중에 지역구·비례의원을 다 합치면 113명인데…… 그중에 여성의 비율은 거의 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나마도 여성 비례를 훌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훌쩍 제로 운영합니다.

○**김한정 위원** 우선 선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지 이 제도마저도 없었다면 광역에는 여성 진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광역이나 또 기초의회까지 포함해서 지방의회 여성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개정의견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방향에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같이, 그러니까 극도로 사회가 이념적으로나 지지정당에 따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큰 방향에서 말과 그다음 전화 그리고 또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자에 대한 서열화 이런 것을 이렇게 풀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전화로 하는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이렇게 되고 또 유권자가 소품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별로 소수의견이, 집단에서 분위기에 따라서 선거가 되고 또 그 집단 내에서 소수의견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정치적 의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 가지고 상시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말과 전화와 문자를 마음껏 하게 해 놓으면, 지금도 문자폭탄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요.

이야기하는 김에 총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치인에 대한 지지단체나 동호인 모임 선거운동 허용을 할 때 선거운동단체가 난립하거나 또 선거를 과열시키고 혼탁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정치인 지지단체, 동호인 모임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요즘과 같이 급조되고 또 이념에 따라 편향된 단체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선거 분위기를 과도하게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그중에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이 공약을 비교해서 서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가 이념적으로 갈등화 돼 있고 언론에 대해서 공권력이 장악을 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항상 이야기인데, 선거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기제가 우리나라같이 3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학생인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선거운동을 좀 더 자유롭게 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사회정치적인 소수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그 집단 분위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 심리적인 압박이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미 기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안을 만들 때 좀 더 우리나라 현실을 고민해 가지고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정태옥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이 개정의견을 작성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법만큼 규제가 많은 선거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공명선거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인데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성숙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발달로 인해서……

○정태옥 위원 총장님, 시간이 다 돼서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불법선거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선거법대로 가면 사회인의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이나 집단 간 갈등을 굉장히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선거법의 문제는 불법이나 돈선거나 이런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거법은 집단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 뜻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말씀을 더 좀……

○정태옥 위원 답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너무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 그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은가 해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18세 선거연령 인하 부분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19세로 되어 있는 부분, 다만 18세 연령 인하로 인해서 교육현장의 정치화 이런 우려 사항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관련 말씀 잠깐 하시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개헌특위자문위 활동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개헌안 내용 중에 ‘남녀동수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취지와 자문의견의 상세내용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문의견의 상세내용은 ‘양성평등을 선거의 영역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취지를 읽어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그 성격상 어떤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당선거분과에서는 이것을, 이번 개헌할 동안에 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니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의 내용입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그러면 남녀동수제에 대해서 우리 분과에서 합의가 있었느냐, 합의는 있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적지 않으셨어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특별히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 결선투표제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연방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원장 원혜영 연방제가 아니고 양원제겠지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양원제. 양원제에 대해서는 정당선거분과에서는 많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정당선거분과 차원에서는.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 활동보고 자료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취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집어 넣으셔서 ‘이런 개헌안 내용에 대한 남녀동수제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다음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박용진 위원** 저희가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분방식이고, 또 하나는 당비와의 매칭펀드제도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방향 다 입법과제가 돼서 우리 정당사와 정치사에 새로운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불어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지급이 매해마다 지급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선거에 임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선거보조금이 나갑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선거보조금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선거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 국고에서 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선거보조금이 아니고요, 선거비용 지출한 것에 대한 보전이지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나가고 선거보조금은 또 따로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보전을 또 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중보전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언론에서.

○**박용진 위원** 저는 이게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2013년에 선관위에서도 개정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선거비용을 별도로 보전해 주는 게 사실상 정당의 선거채테크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국민 혈세로 이중지출을 계속해서 해 왔다고 하는 점에서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 의견 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사실 그런 비판이 2010년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지적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개정의견을 제출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측에서는 재정압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정당 후원회가 마침 부활됐습니다, 올해 6월 30일 날. 그래서 연간 50억 또 선거가 있을 때는 100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이 되고 이중지급이 되니까 아울러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지난 2013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어쨌든 정당이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개정의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당 후원회도 부활이 된 마당이고 지금 다른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당 개혁의 방향이 당비 내는 당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인식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역할을 하고, 저희 정개특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7페이지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경우들의 경우는 정치 신인들보고 도전하라고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30대 청년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 되는 선거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도 없는 터에 만일에 이것을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받아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혹여 다른 정치권에서나 혹은 내부 검토를 하시면서 이로 인해 우려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바는 없고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정권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가 있다.

그다음에 일부 의원님께서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대되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원회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한도가 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차피 파이는 한정적일 것 같은데 국회의원 후원회 쪽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한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사실은 정개특위 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으나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개특위에서 노력을 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언급이 없는데요. 기부행위에 대한 제안 중에서 사회통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정확하게 부합이 안 돼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풀자니 선거법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부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손을 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를 하나 들면 동기동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 동기동창은 평생 친구인데 경조사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사람 노릇은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정치적 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정당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정당법의 개념 정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활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고 쟁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당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념 정의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기본활동에 대해서는 예시를 한다든지 열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관위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정개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박찬우 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행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정당활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은 지구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협 차원 행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할 때 비용 문제가 상당히 처리하기가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도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행사하고 나서 도당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원협의회가 존재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그래서 구·시·군당 다시 부활을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부활을 제안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고 양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암이 있는데 그게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 그러면서 정당의 기초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작은 문제 같기도 한데, 12페이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별로 1명씩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6명 이렇게 해 뒀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박찬우 위원 그리고 의사결정은 3분의 2에서 과반수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그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정당구조 같으면 짝수가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지요.

○박찬우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의견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먼저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아까 주신 자료의 ‘전국당과 지방당을 구분 없이 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앞의 1페이지에 보니까 헌법조문을 현행 헌법과 개헌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할 것 같은데, 전국당과 지방당을 구분 없이 하자라는 개헌안으로서의 제8조 안이.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구분 없이 가자라는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병폐 중에 하나가 헌법이든 법률이든 너무 짧게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좀 상세하게 법률안을 다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당과 지방당 구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당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정당법에 보면 중앙당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저는 전국당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당을 두지 않으려면 안 둘 수도 있도록, 물론 두겠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 중앙당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당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필수사항에서 좀 빼 주는 것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제, 모든 선거라든가 정당 운영 체제에서 중앙당을 두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유성엽 위원 우리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지체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잘못된 중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원내 정당으로 운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유성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폐지를 했을 때, 중앙당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도록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다음에 다시 개헌특위 자료로 돌아와 가지고 아까 8페이지의 ‘비례성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 여부’ 하는데 이것에는 지금 조문안이 없네요, 개헌안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채택해서 헌법에 반영한다면 어떤 내용 정도로 표현을 해서 헌법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지금 활동보고서에는 현행 헌법에 조문이 있는 것은 해당 부분을 바꿀 것을 적시했지만 현행에 관련 조문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것은 그냥 그 취지와 내용만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 관련된 사안은 개헌특위에서도 다룰 수도 있지만, 개괄적인 방향이나 어떤 의무화하는 문제를.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 정개특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에다 이 내용을 반영한다면 어떠한 표현으로, 어떤 수준의 내용으로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그 안을 좀 구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아직 그 작업까지는 우리 정당선거분과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성엽 위원 언제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을 개헌해서 헌법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수준·표현·내용으로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조문화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라도, 오늘 지나서라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당 운영, 특위 공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컷 오프(cut-off), 각 정당에서. 그런데 이것을 정당의 자율에만 맡기기

에는 부패·부작용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헌·당규가 아니고 정당법 등 상위 규정에다 컷 오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에 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컷 오프가 가능하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한 컷 오프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법률에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글썄요, 깊이 있는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 다만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법에는 이게 원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정당이 자율을 제대로 소화해서 운영해 주면 좋은데 그 자율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서 뭔가 일정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글썄요, 일단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그것은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것까지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유성엽 위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의 운영 실태를 잘 판단해서 자율을 주고 자율을 보장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법률에서 뭔가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까 당비를 많이 확보·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과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정당법에 보면 당비당원, 진성당원에 대한 권리를 좀 애매하게 해 놔서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 소위 현실적으로 권리당원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일반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과 진성당원의 구분·차이를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에서 정당법을 조금 더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 개정의견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연 3만 원에서 12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아마 진성당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의견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성엽 위원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선거권 연령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피선거권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저희가 많이 듣는 이유가 외국의 입법례였는데요. 피선거권 연령 관련돼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캐나다·호주·독일 다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19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프랑스 하원이라든지 튀니지 등도 23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하고 일본 정도만 25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 입법례하고 비춰 봐도 좀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20대 유권자의 숫자는 전체 유권자 중 15.9%인데 의회에 진출한 20대 국회의원이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봐도 20대가 정치적으로 잘 대변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피선거권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외국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아주 낮지요. 낮는데 저희 선관위에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중앙선관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 할 수 없는 자의 폭을 좀 줄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내용이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거운동 허용으로 보여요,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가 없어 보이거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영국 · 프랑스 ·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은 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확대되고 심화되려면 당연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져야 되는데 외국의 예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선거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통반장은 아니고요, 통장까지는 저희는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장과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 교사에 관한 부분은 일단 헌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제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라든가 사회 여건,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함께 묶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권력자로부터의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조문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알겠습니

다.

○박주민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 도입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신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보고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둔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취지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13만 명당 1명이고, 프랑스는 11만 명당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든 아니면 현재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국민을 국회의원 일인이 대표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너무나 많은 양론이 있어서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가 국민들의 의식, 다원화된 사회구조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정서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200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지역구에 관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그런 점으로 아마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고 얘기하셔 가

지고 저도 재차 확인하기가 곤란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웃음)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작년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당 면적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서울의 1개 선거구의 면적을 알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면적을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1개 선거구의 면적이 평균 12.4km²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 보면 1개 선거구의 면적이 2100km²입니다. 이게 몇 배 차이 납니까? 약 170배 정도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선관위에서 보고하신 5페이지에 보면 ‘둘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증액’ 해서 이제 ‘둘 이상 자치구·시·군 구성으로 선거구가 넓고 선거연락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정을 하나, 추가로 이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지만 선거구를 전국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제는 대도시 쪽으로 계속 늘어난 거예요. 20대에도 경기도가 한 6개 더 늘어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강석호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또 수는 지방에서 줄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왜 면적을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느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글썄요, 저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인구비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대표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구조가 지방자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모든 국가정책 예산을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 점점 더 악화를 가져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제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연간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이 온다, 그 부분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회의원 한 분이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인구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충분히 법으로서, 몇 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석호 위원 좋습니다. 총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거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자꾸 떠밀지 마시고, 선거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것도 있고 부처에서 입법을 또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당한 부분이 이제까지 누적돼 온 것은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둘 이상 자치구 시군 선거비용 제한액을 증액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입법권을 따지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게 대답하면 현재 저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획정을 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이 안을 검토하게 된다면 의원정수를 증가하는 쪽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19대 때 20대 총선을 하기 전에는 많은 지방의 의원들이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수도권·비수도권의 차별성을 없애더라도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방법을 도출해서 가지고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제가 비례대표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직능, 계층 이런 소수자 등이 국회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들어오면서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순서, 시물레이션 1·2·3·4·5·6·7·8·9·1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직능, 계층, 소수자 이러한 부분들 대표했던 비례대표들의 순번에 지역을 맡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원의 의석수를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처럼 비례대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셨고 우리가 청년문제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비례로 오신 분이 거의 손을 꼽아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보존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의 문제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제안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필요해서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제안하신 게 미리 한계를 갖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두었던 것을 반영할 수 있

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글썽요, 저희가 2015년도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소수자 그다음에 직능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례대표가 100명으로 늘어나는데 권역별로 쪼개다 보니까……

○정춘숙 위원 늘어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이것은 저희가 200대 100으로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는 200대 100 이래서 비례대표가 지역의 2분의 1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혹은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유동적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박영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제가 개헌특위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동수제가 여기 표시가 되고 그때 분위기로 보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선거법 안에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여성이 17%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동수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퍼센티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과연 무슨 방안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고민해서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실천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 와 주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알기로는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사가 다르겠습니다만 여성 의원 비율이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대만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훨씬, 38% 정도 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원 선거후보자 명부에서 홀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도입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과연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어떻게 여성 의원의 숫자를 확보해서 헌법정신, 남녀동수,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고민해서 좀 대안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보면 지금 선거……

따로 말씀드리지요.

○위원장 원혜영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반갑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선관위에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감히 제 개인적으로 총론을 평가를 해 보고 싶다면 정말 손대야 할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6월 13일입니다.

○咸珍圭 위원 그렇지요. 1년도 안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없어요. 같은 지방선거

를 치르면서 광역의원선거는 소선거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 그것 나눠 먹는 선거예요, 기초의원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광역선거는 소선거구, 기초선거는 중선거구, 같은 선거에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런데 광역의원선거도 말씀하신 대로 중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광역, 국회의원이든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재돼 가지고 우선 기초의원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광역하고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도 현역입니다만 현역 의원하고 원외지구당 위원장, 저도 원외 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된다고 보sey요? 현역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지금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 제도라든가 당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원외 위원장들이 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많이 제약……

○咸珍圭 위원 지금 자기 돈으로 사무실도 못 내고 기초적인 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러한 지적은 항상 많이 있어, 학계에서나 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손을 댈 것을 손을 안 대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역이지만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역들이 지금 불리한 게 있다는데, 뭐 불리합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요. 그런 부분에 손을 대셔야 되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지구당 그대로 부활이 아닌 제한적 지구당 부활, 회계를 쓰면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평상시에 한다든가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거운동을 안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도는 안 되는 것인데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그것이 풀어져 있고요.

○咸珍圭 위원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개정을 하세요. 이게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하는데 말이지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의 원외 위원장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시의원, 도의원, 다른 정책연구소나 이런 것 통해서 없혀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도 풀고 전화도 풀고 여러 가지 답변…… 그런데 ARS는 왜 안 풀니까? 풀면 다 풀어 버리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것은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咸珍圭 위원 마찬가지로요. 과감하게 풀면 다 풀어 버리지. 왜냐하면 지금 말이나 전화를 푼다고 그러면 일 못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을 좋게 이렇게 하셨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요. 1년 내내, 4년 내내 선거운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신인들이 정치활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咸珍圭 위원 제가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현역하고 어느 정도는 받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이것 뭐 전국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는 안 되고 소규모는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니, 향우회, 종친회는 저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의해서.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소규모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닙니

다. 전국단위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咸珍圭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4쪽의 표현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선관위가 낸 의견 중에 구·시·군당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게 있어요.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선관위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대표의 사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당을 보는 인식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뭘 걱정하는지 잘 알겠지만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실 때 정당 내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내 민주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면서 더군다나 국회에 낸 자료에 어떻게 당대표의 사당화가 우려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선거 때 각 정당의 활동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소위 선거 관리의 대상이고 감독의 대상이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가 지나치게 우월적 인식을 가지고 정당의 민주성을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당이 생기면 당연히 중간의 시·도당과 중앙당이 정당의 민주성은 다 확보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구 차원의 당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민주성으로 되겠느냐 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불쾌합니다. 정당을 보는, 국회를 보는 그런 인식들, 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군당의 도입이 됩니까? 결국은 당원들과 주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되는 것이지. 선관위는 그것 하자고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자꾸 말로는 하면서 결국은 또 문제 있는 그런 그룹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신이 이 표현에 깔려 있어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과 단속에 관한 것을 사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다

고 봐요. 나는 그런 갑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공정하게 되고 역사 앞에 뒤흔치는 자세로 하겠다는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단속할 수 없는 건 풀어 주자, 이권 폐쇄하자 또 선거관리위원회 기구의 기능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규제를 신설하자. 나는 조직의 이기적 판단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정말 다시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고, 총장께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서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나, 연구가 부족하고 좀 더 치밀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적극적인 일 때 적극적이고 신중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 그것을 함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꼈는데 정 위원님 말씀에서도……

사당화라는 것이 학문적 용어, 학계에서 주로 쓰는 얘기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토호 세력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어 하나 쓸 때도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갑의 위치에서 작성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없고요. 개정의견을 작성할 때는 많은 고민과 토론, 연구 끝에 이것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유리한 것들만 접근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 조항을 읽어 보니까 당대표를 중앙당의 당대표로 생각하니까 중앙당의 당대표가 시·군·구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좀 과도하지 않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구·시·군당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니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 그리고 또 충분한 검토를 저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시·군당이라고 쓴 것은 하도 지구당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 그냥 용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김상희 위원 국회의원 지역별로 지구당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역구별로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당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마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바꿔 놓은 것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게 해서 구·시·군당이라고 바꿨는데 그 부분도 아마 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리 정개특위의, 국회의 역할은 개헌과 더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선관위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헌과 더불어서, 지금 매번 선거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한 1000만 표의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지금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와 지금 개헌특위의 자문위원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미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선관위가 의견을 내 주셨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특별한 정치적인 전환기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전환기

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관위와 그리고 개헌특위의 자문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이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의원정수 문제에서 국민들의 정서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제가 말씀드리면, 방향은 국민의 그런 대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지만 정수 문제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두 분? 그러시지요? 이준한 교수님하고 사무총장님도 그러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대 때도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의원정수를 늘릴 경우에 사실은 비용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보다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정시키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관위나 그리고 또 개헌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먼저 말씀……

글쎄요, 지금 개헌 논의라든가 이런 것 큰 흐름을 볼 때 권력의 분산, 위임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국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대표성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 그 전제가 대표성 강화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 지역대표성도 고려하면서 비례성도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20

대 총선에도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 25%의 정당 득표율로 41%의 의석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전체적으로 1000만 표의 사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표성이 의회에 반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되고 특별한 정치적인 환경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준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저도 의원정수의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방향의 비용을 고정하고 의원 숫자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증대를 시킨다면 대폭 증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130여 명 정도, 100명 이상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도 있지만 국민적인 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방법은 찾아 보겠습니다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동의가 수반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개헌특위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먼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오신 간사님께 여쭙어 볼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와는 조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대통령제를 함께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김재원 위원 있어요, 없어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없지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심지어 중·대선거구제조차도……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칠레·멕시코·브라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렇게 하고 나니까 정당이 50개가 원내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국가 의사결정도 어렵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전부 과테말라·가이아나·니카라과·수리남·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와 이런 다당제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헌특위에서 선거구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과연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개헌특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네요.

두 번째는 초과의석 문제에 대해서, 초과의석을 인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의석 증가가 불가피하지요, 선관위 실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300석으로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런데……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지요, 200석 정도로 지역구를 줄이면 가능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200석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 보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20대 선거를 생각하면 지역구를 202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98석으로 배분한다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구를 202석으로 만들 때는 인구편차 2 대 1로 따르면 17만 458명으로 되는데 이러면 558개 선거구를 개편해야 되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극한적인 농어촌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정부 형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의석수를 130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국민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아마, 30석도 아니고 130석은 너무나 것 같고요. 그냥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해도 한 326석에서 삼백삼십한몇 석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고, 그러면 총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의석수를 늘리겠다 하면 특권을 줄여라, 또 이렇게 국민들은 다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현실을 자꾸 숨기고 현실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1 대 2 하면서 200석, 100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안을 들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관위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선거구 말씀하셨지만 아마 17만 명 하면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호남지역에서 줄어드는 의석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영남지역보다도. 영남지역은 지난번에 대부분 20만 명 근처로 조정을 했지만 호남지역은 14만 명 근처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6석 정도 새로 줄여야 되고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아는 선관위가 이런 안을 들고 와 가지고 마치 가능한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그 속셈이 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숨기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원혜영 김재원 위원님, 말씀 마치셨지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하나 절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한 것을 보면 합의사항이 있고 계속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된 것이 있다면 그때 입법하고 말 일이지 합의한 것도 여기 갖고 와 가지고, 또 합의되지 않으면 폐기된 건데 그냥 계속 들이미는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그것도 잘못이다 이거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순서를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불렀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입법권까지 부여돼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의지를 가지신 위원님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치개혁발전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앞에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두 가지 보고 내용의 공통성을 보면,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보고와 개헌특위 자문위 활동 보고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내용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이것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개헌특위에서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 도입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보고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얘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초해서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여기에 병립형과 연동형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좀 더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립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습시다.

○**윤관석 위원** 따로 그것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윤관석 위원** 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지금 총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로 해서 2 대 1 비율로 나눈 것으로 돼 있는데 인구비례만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에서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토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 부분이 저희가 그때 2015년도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제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 의견도 제기가 되고 찬성 의견도 제기가 돼서 깊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검토된 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개헌특위 자문위 이준한 교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개헌안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과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지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윤관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시하면 정수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중론인데, 이랬을 때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최소 확대한다면 정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이런 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선관위는 답변이 어려워도 개헌 자문위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론을 둔 것은 제 보고서의 7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식 연동형하고 감안을 해서 1 대 1로 한다면 의원정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 현행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확정 기준을 보면 1 대 2로 하고 그다음에 또 자치구·시·군의 옆에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시·군을 임의로 자르지 못하게 하고 또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구 의석이 23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이백삼십몇 개가 필요합니다. 또 2020년 선거에 인구변동이 있을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역구가 230개에서 240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식 연동형으로 해서 1 대 1로 한다면 그만큼의 비례대표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걸 추산했을 때에 현행 300명보다 몇 명 정도 의원정수가 늘 수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식 변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2 대 1로 줄인다면 그만큼 또 추정할 수 있는 의원정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까 제가 최소 1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2 대 1로 한다면, 230 플러스알파에다가 하면 현행보다 최소 60석 이상 정도 늘어날 가능성을 예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어쨌든 비례대표성 강화에 대해 선관위에서 고민하는 것과 개헌특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쪽은 일반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의 문제이고 하나는 비례대표와 지역하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진짜 수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정도는 조금은 드러내고서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관위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 돌리신 게 있잖아요? 300 기준으로 하면, 2 대 1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박완주 위원 그래서 32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헌특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채택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국민 수용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하지 못하면 어쨌든 의제에서 제의를 하든 수정안을 만들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런 자료를…… 제가 첫 질의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갖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아니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20대에 이게 당리당락이 아니고 정말 대표성·비례성에 대해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수용성이 필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연구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우선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4당 체제 이후에 선관위에서 일면…… 지금 어느 한 당이 또는 어느 분이 문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선관위에서 애초에 이걸 도입할 때 충분히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18세에 했을 때 긍정과 혹시 부정적 여론이 나왔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제출만 해 놓으시고 그냥 국회에다 던져 놓고 각 정당이 알아서 논리적으로 싸워라가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조기 대선 전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

예를 들면 학생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국민들 속에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세 모두가 학생인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의무는 19세한테 다 주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사하겠지만 선관위에서도 좀 더 충분하게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떤 것이 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역시 제안하셨던 선관위가 국회하고 조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역시 또 어쨌든 개헌특위에서는 의미가 그것인 거지요? 공직선거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향후 헌법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한 간사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고개를 끄덕임)

○박완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현행 합법적인 정당은 시도당까지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그 시군구당이 예전의 지구당, 표현 어감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인지…… 예를 들면 저희 천안에는 지역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인데, 예전 같으면 갑지구당·을지구당·병지구당인데 지금 제안

하신 곳은 그냥 천안시, 기초 단위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시·군 소재를 기준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속기에, 잘못된 거지요? 지역구별이 아니고 기초단체 중심의…… 그리고 명시된 것 보니까 시도당은 의무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정도. 그러면 법정 당은 중앙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구·시·군당……

○박완주 위원 시군구가 법정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박완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도당은 중앙당이 알아서 둘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역구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구·시·군당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예를 들어 복합인 경우 네 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네 개 기초에 대해서 시 또는 군 이렇게 당부를 둘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양석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었고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국민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그래서 투명성 예산……거기에 재원에 대해서 후원금과 국고보조와 당비를 쓸 수 있다, 이것까지 규정한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주 위원 이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후

시 사전 조사해서, 이런 안을 제안하기 전에 포커스 그룹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고 한 것은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학계와 정당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논의된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지역당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지구당의 부활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구역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위에 허용하되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아니더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 개정에는 자치구·시·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런데 그 점을 충분히 논의를, 검토를 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구당,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지구당에다가 또 복합선거구 시·군—주로 군이지요. 군이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복수로 있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자율성 또 독립성을 존중해서 군 단위의 지구당을 허용했는데 이것 행정단위로만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겁니까? 그리고 또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 당시에 구·시·군 연락소를 뒀었지요. 당에 연락소를 뒀서 지구당 단위로 했는데 자꾸만 ‘지구당’ ‘지구당’……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고려했고 또 저희는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행정구역 단위가 어쨌든 자치구·시·군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매치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지구당은, 그게 복원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생활단위, 행정단위 중심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저희는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관위 의견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기존의 정치발전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왜 여기에서 또 논의하느냐, 아예 입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있었던 정치발전특위는 입법권이 없는 특위였기 때문에 합의는 있었지만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검토해서 합의가 되면 법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분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김상희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위원장 원혜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김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선관위가 구성방식 변경하고 의결정족수 완화 의견을 냈는데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9대 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관련 법을 개정하고 위원을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을 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김상희 위원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주 난항을 거듭했었는데, 그래서 이 제안이, 변경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니까 이 변경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일차적으로 지난번 시행했던 것에 대한 평가, 시행과정과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시행과정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논의가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 그러십니까?

○김상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님들께 그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저희

가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위원장 원혜영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국회의원정수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회의원은 3 대 1이었다가 지금 2 대 1로 됐지요, 현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다음에 지방의원은 4 대 1에서 3 대 1로 당연히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게 아마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일이 되면 다시 다 재구성해야 된다는가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치 불신이 크고 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일부 여당 의원도 그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차라리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상하라는 말이 안 맞지만 옛날 제헌국회마냥 참의원이 됐든 민의원이 됐든 하여튼 계급적 위계질서가 아닌 그런 순기능적인 면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17개거든요? 그러면 미국 것을 좀 모방할 수 있다면 곱하기 2 해서 34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물론 법적·제도적인 개정 필요성이 있겠지만 해서 한 50명 정도 내지는 51명으로 하고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연히 300명에서 조정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강석호 위원님이나 김재원 위원님도 비슷하실 텐데, 선거 때 제가 가 보면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게 군이 걸쳐 있는데 그런 농촌 지역은 특별 예외지역으로 하고, 서울시 보면 49명이네요. 그것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의 등가성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도 줄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경기도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남녀동수제 관련해서, 이준한 위원님 말이에요.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이게 아마 현재에서 결정할 때 사실 위헌성이 자꾸 대두가 되거든요? 제가 맹인이신 분들 무슨 안마사 자격을 준다는

것을 현재의 결정 취지를 읽어 보면, 거기에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맹인들의 지위 이게 어느 정도 향상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꼭 붙어 있어요.

남녀동수제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기초의원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의원들을, 후보자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타상공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저희 당에서 아마 지난번에 강원도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의원을 전부 다 여성으로 공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현재 결정문의 이것을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가 공직 취임의 그런 게 지위가 향상될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위헌을 피해 가면서 국회의원·광역·기초 전부 다 여성으로 공천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아직 거기까지는 미쳐……

○**咸珍圭 위원** 안 해 봤어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咸珍圭 위원**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지역구에서 후보자로 내도 경쟁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 이준한** 예.

○**咸珍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얘기도 많이,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반장 같은 경우에는 몇 푼 안 되지만 뭘 받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5만 원을 받습니다.

○**咸珍圭 위원** 받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咸珍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맨날 만나는 거예요. 사실 고유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그 만두고 선거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은 받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가지고……

○**咸珍圭 위원** 일정 부분에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굳이 이분들이 무슨…… 그것 그 만두고 선거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직책을 가지고 어느 당이 됐든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누가 반장으로 인정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하고 사적인 게 혼재된단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지, 정치적 자유 확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이준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유성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공직선거법 심사 (1소위원회) (12인)	◎윤관석 원혜영 김상희 박영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5)
	김재원 강석호 박찬우	자유한국당(3)
	유성엽	국민의당(1)
	정양석	바른정당(1)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당·정치 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심사 (2소위원회) (12인)	윤관석 원혜영 김한정 박완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6)
	◎김재원 정태옥 함진규	자유한국당(3)
	유성엽 이용주	국민의당(2)
	정양석	바른정당(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7인)

강석호	김상희	김재원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찬우	원혜영	유성엽	윤관석
이용주	정양석	정춘숙	정태옥
함진규			

○청가 위원(1인)

심상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전문위원	천우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이준한(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대년
선거정책실장	김세환